

된 法人에서 調査를 하도록 限定시킴으로써 더이상 存置할 必要가 없어서 이를 廢止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議案審號 270號 서울特別市遺棄動物保護에 關한 條例案은 動物의 虐待行爲의 防止와 動物을 適正하게 保護하기 위하여 91年 5月 31日字로 動物保護法이 制定施行됨에 따라 遺棄動物의 保護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 것으로써 主要內容은 區廳長은 公共場所에서 遺棄動物을 發見한 境遇에는 그 動物이 適正하게 保護管理될 수 있도록 保護措置를 하여야 하며, 區廳長은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保護措置에 所要된 經費에 相當하는 金額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本 條例案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改正條例案이 2件, 廢止條例案이 3件 그리고 制定이 1件 모두 6件에 對한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委員님 여러분께서 充分히 審議하셔서 기탄없는 忠告와 指導있으시길 期待하면서 提案說明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님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成泰辰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 成泰辰입니다.

1991年 12月 16日字로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流通近代化推進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の 職制改編 및 母法の 關聯規定 改正에 따라; 1989年 11月 1日字로 서울特別市 職制가 改正되어 所管業務 및 當然職 委員의 職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本 條例 第2條第3項第1號 委員 中 “建設管理局長”을 “住宅局長”으로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條例 第6條 第2項에서 幹事는 “物價指導擔當官”을 “商工課長 또는 農蓄課長”으로, 書記인 “消費者保護係長”을 “商政係

長 또는 農水產物流通係長”으로 改正하고자 하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局 主務課長인 “商工課長”과 主務係長인 “商政係長”으로 修正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昌鉉 以上으로 產業經濟局長님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中改正案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서 意見이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流通近代化推進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된 것으로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통근대화추진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증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條第3項第1號 中 “건설관리국장”을 “주  
택국장”으로 한다.

第6條第2項 中 “물가지도담당관”을 “상정과  
장 또는 농축과장”으로 하고 “소비자보호계  
장”을 “상정계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特別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2時 05分)